

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

주요 내용

- 도급인(발주자 포함)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매월 확인할 의무 부여
❖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조항 신설(2020. 5. 27. 시행)

대상 범위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의 도급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공사

▲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' 란?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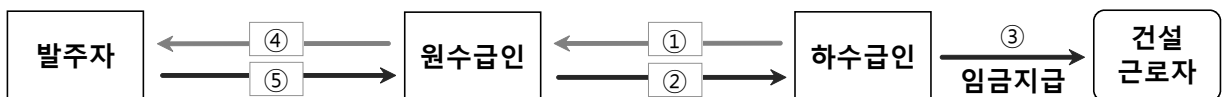
❖ 법규 내용

■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(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)
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하며, 이하 "도급인"이라 한다)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(이하 "수급인"이라 한다)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"임금비용"이라 한다)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 [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]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❖ 제도 흐름도

①,④ : (전월)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 제출 + (당월) 임금비용 청구[건설근로자 명부 제출]



②,⑤ : (전월) 임금 지급내역 확인 + (당월) 임금비용 구분·지급[5일 이내 수급인의 임금비용 전용계좌]

※ 임금비용청구를 받은 원수급인(발주자 포함)은 전월 청구된 임금비용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
- ▲ 임금비용: 모든 건설근로자(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)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
- ▲ 건설근로자 명부: 근로자 개인별 성명, 임금 및 연락처 등 기재

※ 위반 시,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)

*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2항,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

❖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(홈페이지) - 정책자료 - 정책자료실 - 3760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고용노동부
대전지방고용노동청

35238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(둔산동)
TEL 042)480-4520 FAX 042)480-6269